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사무장”을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주임”을 “민원봉사계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구청장의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한다.

⑥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구청장의 공인은 시민봉사실에,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 ②~③(생략) ④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u>사무장이</u> , 민원사무용은 <u>민원주임</u> 이 관수한다. (신설) (신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 ②~③(현행과 같음) ④…… <u>시민생활계장</u> …… …… <u>민원봉사계장</u> …… ⑤ <u>구청장의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한다.</u> ⑥ <u>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 (안)심사보고서

1996. 9.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1996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1996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제4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6. 9. 12.)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기획예산과장 이 은 규

가.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하는 바, 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

나. 주요개정골자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년 2회로 함(안 제2조)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등 주민공개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등 주민공개에 제한을 둘 수 있음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조례안은 '94. 12. 22.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1회이상 해당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된 바, 주민공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마포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의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구보, 구계시판,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현재 구보는 매회 60부를 발행하여 구청 각실과 동사무소에만 배포하고 구계시판의 이용주민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다소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정종합홍보지인 「내고장 마포」 소식지나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정만직 위원):'94. 12. 22.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이 신설되어 주민에게 재정상황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본 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과장):그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상급기관과 협의중 급번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통보되어 각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됨.

○질의요지(정만직 위원):서울시 지침은 언제 통보받았는가?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과장):급번 7월 경에 통보받음.

○질의요지(유남렬 위원):구보는 급년에 몇번 발행했는가?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과장):구보는 정기적으로 발행치 않고 구보에 게재할 안건이 발생할시에 수시로 발행함.

○질의요지(유남렬 위원):지역신문은 어떤 신문을 말하는가?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과장):우리 구 관내에 배달되는 지역신문으로 마포신문, 서부신문을 말함.

5. 토론요지:수정(안)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96. 9. 12. 재재선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중 주민에 대한 공개방법상의 미비점을 수정, 조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안 제4조제1항중 "구보, 구계시판"을 "구정종합홍보지나 구, 동계시판"으로 함.

7. 심사결과: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기타사항: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년월일:1996. 9. 12.

제 출 자:총무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중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의 미비점을 수정 조정함.

2. 주요수정골자

○안 제4조제1항중 "구보, 구계시판"을 "구정종합홍보지나 구, 동계시판"으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중 "구보, 구계시판"을 "구정종합홍보지나 구, 동계시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안)	수 정(안)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u>구보, 구계시판 또는 지역신문</u> 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u>구정종합홍보지나 구, 동계시판 또는 지역신문</u> 에
②(생략)	②(생략)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7
----------	----

제출년월일:1996. 8. .
제 출 자: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하는 바, 공

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

2. 주요골자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연 2회로 함(안 제2조).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등 주민공개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

항 등 주민공개에 제한을 둘 수 있음
(안 제5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제5069호) 제15조

- 지방재정법(1995. 01. 05. 법률제4868호) 제118조의3

4. 제정조례(안): 따로붙임.

5. 예산조치필요성: 필요없음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주민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과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는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보, 구계시판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불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권위,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중심으로 한 재정운영상황을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